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481,586,141 | 14,447,584 |
| 일반회계 | 390,610,512 | 11,718,315 |
| 특별회계 | 90,975,629 | 2,729,269 |
| 공기업특별회계 | 36,847,147 | 1,105,414 |
| 상·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| 36,847,147 | 1,105,414 |
| 기타특별회계 | 54,128,482 | 1,623,854 |
|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 | 28,210,218 | 846,307 |
|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| 16,847,394 | 505,422 |
| 농공지구조성사업 | 467,711 | 14,031 |
| 의료급여기금운영 | 1,502,707 | 45,081 |
|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| 988,400 | 29,652 |
|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| 5,933,399 | 178,002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| 178,653 | 5,360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 명세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는 3,202,747천원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 4,188,1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